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34

제출년월일 : 2002. 10.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 개정이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 및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묘지의 사용기간을 법률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케하는등 동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본문내용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자구 수정(안 제1조)
- 묘지의 사용기간(안 제9조)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함.
- 사용료 감면(안 제8조)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함
-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

구분	사용료(15년간)		관리비(3년간)		비 고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공설공원 묘지(매장)	1m ² 당	18,000	1구당	36,000	
납골묘	1개안치단당	18,000	1개안치단당	10,000	
납골당	1개안치단당	60,000	1개안치단당	20,000	
공설일반 묘지(매장)	1m ² 당	2,000			

□ 개정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2조(공설묘지등의 설치)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를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로 하고 “운영”을 “관리”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설공원묘지,공설일반묘지등 시체를 장사하는”을 “공설공원 묘지내의 매장묘지, 납골시설 등 거창군에서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분묘의 형태), 납골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납골탑(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조제목 “묘지의 구분”을 “공설묘지의 구분”으로 한다

제5조 2항 2호중 “매장 또는 수장”을 “매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분묘 1기당”를 “1기당”으로 하고, 제1호 “9”를 “10”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골묘·납골당 : 안치단 1개

제8조 본문중 “묘지 사용료”를 “장묘시설 사용료 일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

제9조 조제목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용기간”을 “설치기간 만료 일부터 3월이내에”로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수장”을 “매장”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 제1항 제2호중 “사용”을 “설치”로 하고, 제2항중 “법 제15조의 2”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묘지”를 “장묘시설”로 한다.

제12조 제3호중 “관리비”를 “분묘관리비”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30일”을 “1월”로 하고 제2항중 “법 제16조”를 “법 제23조”로 “납골묘지”를 “납골시설”로 한다.

제3항중 “제12조 1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조제목 “분묘의 설치기준등”을 “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등”으로 하며, 제1항,제2항,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 ② 화장한 유골의 안치시에도 또한 같다.
- ③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1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1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 ①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 안치이후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18조의 본문중 “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단위 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 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는 15년, 관리비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중 1. 공설공원묘지중 “북상공설공원묘지”란 다음에 “가조공설공원묘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u>에 의하여 <u>거창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장묘시설</u>”이라 함은 <u>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시설</u>을 말한다</p> <p>2~3(생략)</p> <p>4. “<u>납골묘지</u>”라 함은 <u>공설공원묘지내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u>를 말한다.</p> <p>제3조(묘지의 구분).....</p> <p>제5조 (사용허가등) (생략)</p> <p>① ② (생략)</p> <p>1. (생략)</p> <p>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지에 <u>매장 또는 수장하고자 하는 경우</u></p> <p>제6조(사용면적) <u>분묘1기당 공설묘지 사용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일반묘지 : 9제곱미터 이내</p> <p>2. 납골묘지 : 20제곱미터 이내</p> <p>제8조(사용료 감면) <u>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별표2의 묘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1. <u>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u></p> <p>2. <u>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u></p>	<p>제1조(목적) <u>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2조의</u>.....</p> <p>.....</p> <p>.....<u>관리</u>.....</p> <p>.....</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u>공설공원묘지내의 매장묘지, 납골시설 등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u></p> <p>2~3(현행과 같음)</p> <p>4. “<u>납골시설</u>”이라 함은 <u>납골묘(분묘의 형태), 납골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납골탑(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공설묘지의 구분).....</p> <p>제5조 (사용허가등) (현행과 같음)</p> <p>①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지에 <u>매장하고자 하는 경우</u></p> <p>제6조(사용면적) <u>1기당</u></p> <p>.....</p> <p>1. 일반묘지 : <u>10제곱미터</u> 이내</p> <p>2. 납골묘 · 납골당 :<u>안치단 1개</u></p> <p>제8조(사용료 감면)</p> <p>.....</p> <p>.....<u>장묘시설 사용료 일부</u>.....</p> <p>.....</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u></p> <p>2.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유족		
3.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	3.	(현행과 같음)
4.	군수가 정한 지역에 거주자가 사망 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4.	(현행과 같음)
5.	(신설)	5.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
제9조 (사용기간)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제9조(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은 15 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 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u>사용기간</u> 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u>사용기간</u> 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 에 <u>사용기간</u>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u>설치기간</u> 을..... <u>설치기간</u> 만료일부터 3월이내에 <u>설치기간</u>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사용기간</u> 연장허가 시에는 <u>사용료</u>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여사망자 유골 을 <u>수장</u> 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여사망자 유골 을 <u>매장</u> 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⑤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묘설치기간의 <u>연장기간</u> 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소멸)		제10조(사용권의 소멸)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u>사용기간</u>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u>설치기간</u>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u>법 제15조의2</u>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u>묘지</u>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p> <p>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생략) 1~2(생략) 3. <u>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p> <p>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u>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u>납골묘지</u>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u></p> <p>③ <u>제1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u></p> <p>제15조 (분묘의 설치기준등) ① <u>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u> ② <u>묘지에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u>법 제23조</u></p> <p>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u>장묘시설</u>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p> <p>제12조 (사용권의 취소)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u>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p> <p>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① 1월 ②.....<u>법 제23조</u><u>납골시설</u>.....</p> <p>③ <u>제2항의</u></p> <p>제15조 (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등) ① <u>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치</u>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 <u>화장한 유골의 안치시에도 또한 같다.</u></p>

명 칭	위 치	면적(m ²)	명 칭	위 치	면적(m ²)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84	1,488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136	225
			주상거기공설일반묘지	거기리 산 7	4,760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08	5,537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41	1,785
			소계	16필지	57,689
			웅양죽림공설일반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웅양동호공설일반묘지	동호리 산 6	2,813
			웅양노현공설일반묘지	노현리 산 16	4,007
			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265	3,814
			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187	2,678
			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3	2,400
			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4	992
			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22	2,539
			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	5,795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43	1,752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75	4,469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23	2,704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41	4,046
			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15	1,868
			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39	3,769
			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43	2,664
			소계	14필지	71,289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1309	15,455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88	3,174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4	15,570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125	4,562

【별표 2】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사용료(15년간)		관리비(3년간)		비 고
	기준	금액(원)	기준	금액(원)	
공설공원 묘지(매장)	1㎡당	18,000	1구당	36,000	
납골묘	1개안치단당	18,000	1개안치단당	10,000	
납골당	1개안치단당	60,000	1개안치단당	20,000	
공설일반 묘지(매장)	1㎡당	2,000			